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

(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1
----------	-----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상철·구재용 의원

(찬성자 : 6인)

1. 제안이유

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되어 도서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도서주민의 정주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여건에 제약을 덜 받는 2,000톤급 이상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해 5도 항로에 총 톤수 2,000톤급 이상, 속력 35노트 이상의 전천후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취항 후 3년간 운영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며, 용진군에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재정자금을 용진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가 매년 운영실적을 정산한 증명서류와 함께 용진군수에게 신청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용진군수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
-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의거 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되어 도서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도서주민의 정주 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전천후 대형여객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 항로"란 인천항~백령(소청, 대청 경유), 인천항~연평(소연평 경유) 항로를 말한다.
2. "전천후 대형여객선"이란 총톤수 2,000톤급 이상, 속력 35노트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서해 5도 항로에 전천후 대형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손실"이란 서해 5도 항로에 여객선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비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여객선 취항 후 운영손실이 발생한 여객선사로 하며, 운영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지원기간은 여객선 취항일로부터 최대 3년간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용진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지원금은 여객선 운영실적을 정산하여 제3조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자금을 용진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매년 정산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용진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증명서류는 공인회계법인이 작성하여 공증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④ 용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체결) 용진군수는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조사) ① 시장 및 용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과 관련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시정 요구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제3조제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현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해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사업의 종류) ○ 제4조(사업 면허) ○ 제5조(사업 조건) <input type="checkbox"/> 해사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조(선박 출항통제) <input type="checkbox"/>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조(선박출항통제)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관련 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개발·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제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면허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船齡)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지 여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하는 경우

□ 해사안전법

제38조(선박 출항통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선박출항통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

기상상태	출항통제선박	통제절차
풍랑·해일 주의보	1.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다만,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 중 앞바다(이하 이 표에서 "앞바다"라고 한다)에서 운항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은 해당 항로의 실제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이하 이 표에서 "운항관리자"라 한다)는 풍랑·해일주의보 발효 시 기상상황을 종합분석할 것 ○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조건을 확인하고 선장의 의견을 들을 것 ○ 운항관리자는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하여 출항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2.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해당 항로의 실제 해상상태가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자는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박운항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 ○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
풍랑·해일 경보, 태풍 주의보·경보	모든 내항여객선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시 출항신고 선박의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계 제한시	시정 1 킬로미터 이내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시정 11 킬로미터 이내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항통제권자: 해양경찰서장 · 적용제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000톤 이상 여객선 중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합격한 여객선은 출항통제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 경우 선박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여객선 취항 후 운영손실이 발생한 여객선사로 하며, 운영손실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지원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최대 3년간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용진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손실 지원금 : 1,000백만원 × 3년 = 3,0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영 손실 지원금		3,000	1,000	1,000	1,000	-
재원별	시비	1,500	500	500	500	-
	군비	1,500	500	500	500	-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항만공항해양국 해양도서정책과장 이 상 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운영손실 지원금	1,000	1,000	1,000	-	-	3,000
	소계	1,000	1,000	1,000	-	-	3,000
채원 조달		500	500	500	-	-	1,5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500	500	500	-	-	1,500
	일반회계	500	500	500	-	-	1,5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500	500	500	-	-	1,5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